

#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7~66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## 1. 제안 이유

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하고 「지방세기본법」은 전부개정(17. 3. 28. 시행)됨에 따라,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「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」에 이관하는 한편, 이 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 등 수정함(안 제1조·제3조·제5조)
- 나.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조의 개정예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·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)
- 다.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됨에 따라,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새로 제정하는 「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」로 이관함(구 제7조)
- 라. 상위법령 중복·재기재에 불과한 위원회 규정 삭제(구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조·제6조,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9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'17. 4. 16.~5. 16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(6) 도내 개정 현황

- 입법예고: (5개시) 거제시, 김해시, 창원시, 진주시, 통영시  
(5개군) 하동군, 고성군, 산청군, 함양군, 함안군

##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부과·징수의 권한 위임 등)**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(이하 “도세”라 한다)와 거창군 군세(이하 “군세”라 한다)의 부과·징수 중 납세고지서·독촉장·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,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·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군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**제3조(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)** ① 군수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 및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거창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(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거창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다른 시·군·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·등록면허세·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서류송달의 방법)**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,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읍장·면장 또는 이장·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·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5조(교부금전의 예탁)** 군수는 채권자,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

**제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「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8조와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7조를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8조와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제31조로 하고, 제9조제3항 중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5조를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로 한다.

**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「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」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